의 안 번 호	제2021 - 14호
의 결 연 월 일	2021. 7. 2. (제 7 회)

의결사항

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변경 -

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

제 출 자	위원장 권 덕 철 (보건복지부 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7. 2.

1. 의결주문

○ 공단 통상임금소송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해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○ 공단 통상임금소송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을 위한 공단관리운영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으로, 98.9억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확보 필요

3. 주요내용

○ 공단 통상임금소송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임금차액 지급에 필요한 98.9억원을 공단관리운영 인건비(보수)에서 증액하고, 여유자금운용(단기자금운용)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재정법 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및 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, 국민연금법 제103조(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),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

다. 관계부처협의 :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협의

< 별 지 >

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-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예산 변경 -

2021. 7. 2.

보건복지부

1. 계획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

□ 변경사유

○ 공단 통상임금소송 법원판결 확정에 따른 공단관리운영 인건비 부족 예산 확보

- 공단 **통상임금소송 법원판결 확정***에 따른 **임금차액 지급**을 위한 **공단관리운영 인건비**가 부족한 상황으로, **98.9억원**을 **기금운용계획 변경**으로 확보 필요

* (대법원 판결) 특근수당(시간외수당)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기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, 내부평가급의 최소 지급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('21.5.13.)

□ 변경내역

○ **(증액)** 국민연금기금 기금운영비 내 '공단관리운영 인건비' 98.9억원

○ **(감액)** 여유자금운용(국민연금기금) 내 '단기자금운용' △98.9억원

※ '공단관리운영 인건비'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2020 계획	2021년 계획	2021년 변경요구(안)
합 계	390,122	397,881	407,769
인건비	390,122	397,881	407,769
• 보수	390,122	397,881	407,769

2.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1년 계획현액 (A)	2021년 변경		비 고
		요구(B)	증감(B-A)	
합 계	133,768,799	133,768,799	-	
[7300]국민연금기금운영비	531,170	541,058	+9,888	
[7376] 기금운영비	834	834	-	
[7378] 국민연금공단운영지원	530,336	540,224	+9,888	
[605]공단관리운영 인건비	397,881	407,769	+9,888	
[110]인건비	397,881	407,769	+9,888	
[01]보수	397,881	407,769	+9,888	
[7400]국민연금운영(여유자금운영위탁등)	299,679	299,679	-	
[7431]국민연금공단 사옥확보 사업	25,492	25,492	-	
[7432]국민연금 제도운영 사업	109,436	109,436	-	
[7433]국민연금 복지사업	77,042	77,042	-	
[7478]국민연금 징수업무 위탁사업	87,709	87,709	-	
[7600]국민연금운영(급여지급)	29,172,591	29,172,591	-	
[7631]국민연금급여지급	29,172,591	29,172,591	-	
[9700]여유자금운용	103,765,359	103,755,471	△9,888	
[9720]여유자금운용(국민연금기금)	103,765,359	103,755,471	△9,888	
[972]국민연금기금 단기자금운용	2,601,017	2,591,129	△9,888	
[470]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	2,601,017	2,591,129	△9,888	
[02]통화금융기관예치금	2,601,017	2,591,129	△9,888	

참고 1 **공단관리운영 인건비(7378-605) 변경 세부 내역**

1. 변경사유

□ 공단 통상임금소송* 법원 판결 확정으로 임금차액 지급 필요

* 특근수당(시간외수당) 산정 기준임금인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다툼으로, 공단의 경우 정기상여금, 복지포인트, 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임금차액 요구

○ **(대법원 판결)** 기존 통상임금*에 **정기상여금, 내부평가급의 최소 지급분**에 대해서 통상임금성 인정 판결('21.5.13.)

*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, 현재 기본급(기본연봉), 대우수당, 명절휴가비, 장기근속수당, 중식비, 직급보조비가 포함

□ 통상임금소송 진행 경과

대상	구분	관할법원	사건 번호	참가인원	선고금액(대상기간)	진행 경과
노조원	1심	서울동부지법	2014가합101277	3,353	31.2억('10.09. ~'14.02.) (이자 4.2억 별도) ※ 당초 선고금액(31.8억)에서 원고·피고 합의에 따라 조정	1심 선고 ('16.11.03)
			2015가합102123	46		
	2심	서울고법	2017나2001231	3,399	**97.9억*('10.9.~'17.05.) (이자 15억 별도)**	2심판결 ('20.12.15)
	3심	**대법원**	**2021다208581**	**3,316**	〃	**심리불속행기각 ('21.5.13.)**
			2021다208598			
비 노조원	1심	전주지법	2017가합116	784	9.7억('14.01.~'16.12.) (이자 0.2억 별도)	1심 선고 ('17.12.22)
	2심	광주고법	2018나10123	782	**12.3억**('14.1.~'19.7.) (이자 0.1억 별도)**	2심판결 ('21.1.28.)
	3심	**대법원**	**2021다219277**	**774**	〃	**상고취하 ('21.5.25.)**

* (노조원) 3심 선고액 97.9억원은 1심 기지급액 31.2억원 포함 → 추가 지급할 금액은 66.7억원

** (비노조원) 3심 선고액 12.3억 원은 1심 기지급액 9.7억원 별도 → 지급할 금액은 12.3억원

2. 추가소요예산

□ (세부사업) 공단관리운영 인건비(7378-605)

□ (추가소요액) 보수 9,888백만원

○ 소송가액 및 지연이자 9,888백만원(7월말 지급 기준)

- 노조원 소송 8,648백만원, 비노조원 소송 1,239백만원

※ 세부 산출내역(7월말까지 이자 가산)

□ (추가소요액) 보수 9,888백만원

(단위 : 원)

구 분	계	노조원소송	비노조원소송
• 지급대상금액(가=a-b)	7,895,310,780	6,668,278,902	1,227,031,878
- 선고금액(a)	11,015,909,614	9,788,877,736	1,227,031,878
- 가지급액[1](b)	3,120,598,834	3,120,598,834	-
• 법정이자(나)	1,478,403,216	1,471,175,494	7,227,722
• 가산이자(다)	582,765,122	508,941,506	73,823,617
• 환수금액[2](라)	68,630,856	-	68,630,856
☞ 실지급액(가+나+다-라)	**9,887,848,262**	**8,648,395,902**	**1,239,452,361**

1) 2심에서 원고, 피고 합의에 따라 조정된 1심 선고금액

2) 1심 인정된 이후 2심에서는 불인정된 2016년 이후 복지포인트 금액

참고 2 **통상임금 소송 판결내용 요약**

□ 노조원 소송

○ 1심 판결(2016.11.3.)

- **정기상여금에 대해서만** 통상임금 인정

구분	대상기간	원구 청구사항	판결	선고금액	기지급액
서울동부지법	'10.9.~'14.2.	**정기상여금**	**인정**	31.8억원	36억원 (이자 4.2억포함)
		복지포인트	미인정		
		성과급	미인정		

○ 2심 판결(2020.12.15.)

- **정기상여금 및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**에 대해 통상임금 인정

구분	대상기간	원구 청구사항	판결(대상기간)	선고금액
서울고법	**① '10.9.~ '14.2** **② '14.3.~ '17.5.** (청구취지 변경으로 대상기간 확대)	**정기상여금**	**인정(①+②)**	97.9억원 (1심 선고금액 31.2억*포함)
		복지포인트	미인정	
		성과급	**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만 인정(①+②)**	

* 2심에서 원고, 피고에 따라 조정된 1심 선고금액

○ 대법원(2021.5.13.) :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**2심판결 확정**

□ 비노조원 소송

○ 1심 판결(2017.12.22.)

- **정기상여금 및 2016년 이후 복지포인트** 통상임금 인정

구분	대상기간	원구 청구사항	판결	선고금액	기지급액
전주지법	'14.1.~ '16.12.	**정기상여금**	**인정**	9.7억원	9.9억원 (이자 0.2억포함)
		복지포인트	**2016년 이후 부분 인정**		
		성과급	미인정		

○ 2심 판결(2021.1.28.)

- **정기상여금 및 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**에 대해 인정 판결
- **1심에서 인정된 복지포인트** 관련 **기지급분**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 산정하여 **환수** 예정

구분	대상기간	원구 청구사항	판결(대상기간)*	선고금액
광주고법	**① '14.1.~'16.12.** **② '17.1~'19.7.** (청구취지 변경으로 대상기간 확대)	**정기상여금(②)**	**인정(②)**	12.3억원
		복지포인트	미인정	
		성과급	**내부평가급 최소지급분만 인정(①+②)**	

* 1심 대상기간(①)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간 다툼이 없어 2심에서는 확대된 대상기간(②)에 대한 금액만으로 선고 판결하고, 내평최소분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기간(①+②)에 대한 금액으로 인용판결

○ 대법원(2021.5.25.) : 피고의 상고취하로 2심 판결 확정

참고 3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규정

□ 국가재정법 제70조 [기금운용계획의 변경]

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기금관리주체(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)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·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**주요항목 지출금액**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**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변경할 수 있다.** <개정 2008. 12. 31., 2020. 6. 9.>

1.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**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**

□ 국가재정법 제74조 [기금운용심의회]

제74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**심의회의 심의**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2. 31., 2020. 6. 9.>

1.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
2. **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**

⑤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,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□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[기금운용계획 변경]

Ⅳ. 기금운용계획 변경

□ 기재부 협의 및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사항(주요항목의 20% 이내 변경)

③ **여유자금 운용,**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의 **재원**으로 **다른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**시키는 경우. 다만, 여유자금 운용,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간 지출금액 변경은 제외